[서식 예] 운송대금청구의 소(대금지급기일 없는 경우)

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 전화·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운송대금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〇〇. 〇〇. 〇〇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, 피고는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람입니다.
- 2. 원고는 2000. O. O. 피고로부터 운송대금 10,000,000원에 OO시 OO구 OO 길 OO 소재 피고의 창고에 있는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를 같은 해 O. OO.

까지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○ 소재 소외 ◈◈주식회사에게 운반하여 라는 의뢰를 받아 약정대로 위 물건을 운반하였으며, 위 운송의 대금지급에 하여 기한을 정하지 아니 하였으므로, 원고는 위 물품의 운송이 끝난 뒤 피고 에게 20○○. ○○. ○.까지 위 물품의 운송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통고서를 내 용증명우편으로 보냈습니다.

- 3. 그러나 피고는 지금까지도 계속 미루기만 하고 위 물품운송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4.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운송대금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통고 서로 운송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기일의 다음날인 20〇〇. 〇〇. 〇〇.부터 이 사건 소방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받고 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화물운송계약서

1. 갑 제2호증 물건수령증

1. 갑 제3호증 통고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. 0. 위 원고 000 (서명 또는 날인)

| 관할법원 | ※ 아래(1)참조 | 소멸시효 | ○○년(□☞소멸시효일람표 ^^ |
|-------|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출부수 |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| | |
| 비 용 | 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 | | |
| 불복절차 | 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| | |
| 및 기 간 | ・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 | | |
| 기 타 | ·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,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며, 채무이행의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음(민법 제387조). ·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,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청구를받은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,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청구를받은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집(대법원 1988. 11. 8. 선고 88다3253 판결). | | |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

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**જે**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회 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